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북극항로청’ 신설〉

■ 주진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538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 지 원

목 차

I . 제안경위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II . 검토의견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주진우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6. 3. 17.
3. 회부연월일 : 2026. 3.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변화로 북극해 빙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기존의 수에즈 운하 항로 대비 운항 거리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 개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북극항로는 단순한 항로 개척을 넘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백년 먹거리’로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며, 이미 북극항로 선발 주자인 러시아 등 주요국은 대규모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다수의 원자력 쇄빙선을 운용하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임시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에서 수행중이며, 부처별 파견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외교·경제적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전문성을 갖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

설하여, 항로 개척,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와의 국제 협력 및 거점 항만 육성 등 북극항로와 관련된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이 ‘북극해 시대’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7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관장 사무에 ‘북극항로’를 추가하고(안 제 47조제1항),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북극항로청’을 두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해양수산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 해운·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수산자원개발, <u>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②·③ (생략) <u><신설></u> <u><신설></u>	제47조(해양수산부) ① ----- ----- ----- ----- <u>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해양안전심판 및 북극항로-----.</u> ②·③ (현행과 같음) <u>④ 북극항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북극항로청을 둔다.</u> <u>⑤ 북극항로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u>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물류 경로로 부상함에 따라,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소속의 외청인 ‘북극항로청’을 신설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통합적으로 관장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북극해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임.

현재 북극항로 관련 업무는 해양수산부 내 조직인 ‘북극항로추진본부’¹⁾가 수행하고 있으나, 정책의 연속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극해 연안국들과의 복잡한 외교·경제적 협상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북극항로는 수에즈 운하 대비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존 주요 교역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경제적·전략적 가치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산된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의 독립적인 외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북극항로의 개발과 활용은 국제외교·안보,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연구·개발, 도시 및 지역개발 등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복합적 사안²⁾이고,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해양수산부 내 북극항로추진본부 역시 다수 부처의 인력으로 운영³⁾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단일부처 산하의 외청을 신설하여 전담

1) 북극항로추진본부: 1본부 본부장 및 3과, 31명

2) 해양수산부: 항로개척 및 항만/ 외교부: 대러·대미 외교/ 산업통상부: 조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도시 및 지역개발 등

3) 과학기술, 외교, 행정안전, 문화체육, 산업통상, 국토교통, 해양수산, 기획예산 등

하게 하는 방안과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수행하는 방안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일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편, 최근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⁴⁾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중심의 종합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를 통한 정책 조정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바, 이처럼 북극항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본 개정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외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 관계 법령상⁵⁾ 정책과 관할권의 범위,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9

4) '26.4.2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가결/ '26.5.7. 본회의 의결/ '26.6.16. 공포(6개월 후 시행)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붙임의 [참고4] 참조

5) <정부조직 관계 법령 사항>

- 「헌법」 및 「정부조직법」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이 정부 정책을 분담하여 수행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정의) : ‘중앙행정기관’이란 국가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행정기관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②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업무의 성질과 양으로 보아 기존 행정기관의 기구 개편 등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한 타당성이 있을 것

참고1

북극항로 개요

□ 북극항로의 정의

- ^{세계해사기구} IMO는 그린란드 남단과 베링해역의 북측을 북극해역으로 정의, 북극항로는 북극해역을 운항하는 항로로 통상 3가지로 구분

- 유럽기준 북동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항로, 러시아 연안에 해당하여 러시아는 북동항로 운항에 자국의 허가승인을 요구
- 유럽기준 북서항로는 아시아와 美 서부를 잇는 항로, 자연조건으로 상업운항 가능성은 저조



* 캐나다·그린란드 해빙은 여름철에도 녹지 않으며, 섬이 많아 대형상선 운항 위험

- 중앙항로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항로로 공해이기는 하나, 해빙이 존재하는 곳이므로 쇄빙선을 동원하여도 운항이 위험한 지역

☞ 통상 북극항로는 북동항로를 지칭(이하 '북동항로'를 '북극항로'로 재정의)

□ 북극항로의 활용 가치

- 북극항로는 부산항과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로, 수에즈 운하보다 이동거리는 약 37%, 시간은 약 10일 단축

<부산항-로테르담항 간 항로비교>



- 전문 연구기관(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북극 빙하가 녹는 여름(7~11월)에는 북극항로 운항이 가장 운항비용이 적은 것으로 추산

* 5,000TEU 컨선 기준 1회 운항비: (북극항로) \$300만, (수에즈 운하) \$380만, (희망봉) \$417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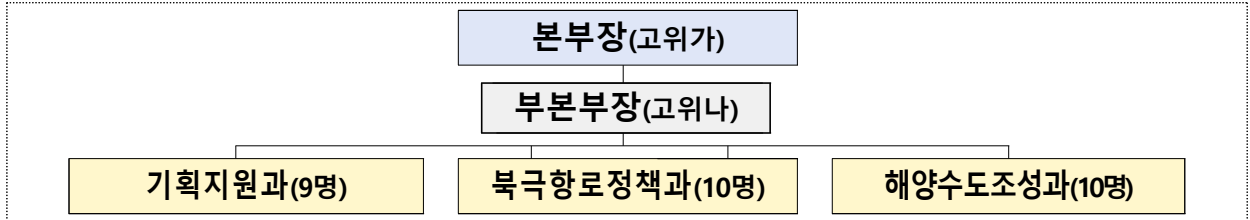
- ◆ (국토부) 동남권역 도시개발, 트라이포트 조성 등 협업
- ◆ (외교부) 러시아, 미국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협업
- ◆ (기획처·금융위) 재정 지원, 금융지원 확대 등 협업
- ◆ (산업부) 조선해양관련 산업단지 지정·조성 등 협업
-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사업 발굴·육성 등 협업
- ◆ (행안부·지자체) 메가시티 조성 및 지역특화산업 개발 협업
- ◆ (공공기관) 북극항로 해빙, 탐사 등 전문(과학) 기관의 수행 협조 필수

- 북극항로 개척 및 해양수도권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균형감 있는 국토 개발으로 균형발전, 관광 활성화, 국제협력 등의 협업 필수
- (국토부) 한북극 물류 거점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교통망 확충 등 도시개발 관련 및 항만·철도·항공 등 트라이포트 조성을 위한 참여 필요
 - (외교부) 러시아, 미국 등과의 외교전략을 통해 북극항로의 상업적 운항, 자원개발 등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참여 필요
 - (기획·금융) 해양수도권 개발에 필요한 자금 유통과 해양수도권 내 非해양 산업(제조업, 조선업 등) 육성을 위해 투자공사 신설을 지원하고,
 - 북극진출 기업·선사 대상 금융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화물 유치 보조금 등 지원책 신설을 위한 참여 필요
 - (산업부) 조선(소) 관련 사항 총괄 및 선박MRO(유지·보수·운영) 기업이 집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지정 등을 위한 참여 필요
 - (문체·행안·지자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문화체육, 예술, 홍보, 관광 등 발굴·육성으로 메가시티 조성 및 안정적인 해양수도권 발판 마련
 - (공공기관) 북극 조사, 쇄빙선박 개발, 해빙 예측 등 객관적 과학 기반의 운항 제도, 시스템 구축, 데이터 축적 등을 위한 참여 필요

참고3

북극항로추진본부 기구·인력 현황

○ 기구: 해양수산부 소속 임시기구



○ 업무분장

부서명	인원	담당 업무
합계	31명	
본부장	1명	• 본부 총괄
부본부장	1명	• 본부 업무 총괄 기획·조정
기획지원과	9명	정책 수립·위원회 운영 총괄 • 과 업무 총괄 • 북극항로 기획·법률·국회·언론 대응 총괄 • 부처·지자체 북극항로 예산 연계협의 • 추진본부 운영지원 등 총괄 • 북극항로위원회 사무 운영 • 북극항로 개척 마스터플랜 수립 및 기획 지원 • 추진본부 운영 지원 • 북극항로 기획 지원 • 북극 기초조사
북극항로정책과	10명	항로개척, 인프라조성, 국제협력 • 과 업무 총괄 • 북극항로 전용선박 개발 등 R&D사업 총괄 • 북극항로 시범운영 및 항만 인프라 개발 • 러·북극 물류자원 개발 및 트라이포트 지원 • 미·러 등 대외협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 항로 개척 인프라 조성 및 국제협력 지원 • 북극항로 시범운영 및 항만 인프라 개발 지원 • 북극 현지 조사 • 쇄빙선 건조, 기술개발 지원
해양수도조성과	10명	교통·물류·금융 등 도시개발, 조선 등 특화산업 육성 • 과 업무 총괄 • 도시재생 및 동남권 교통망 확충 • 부산항 북항 재개발 부지 내 해양클러스터 조성 • 동남권투자공사 대응 및 금융지원 확대 • 해양수도권 조성 관련 동남권 통합개발 지원 • 해양레저관광 및 新해양산업 발굴·육성 • 해양문화 육성 • 배후단지 내 산단조성 • 조선·해양산업 특화지원 • 지역개발, 동남권(부·울·경) 메가시티 지원

참고4

북극항로 특별법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명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목적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기술 및 인력 기반 조성, 북극항로와 연관된 산업의 육성
정의	▶ (북극항로) 북극해를 포함하여 운항하는 항로 ▶ (북극항로 연관산업) 북극항로를 활용한 선박 운항과 관련된 산업, 북극항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 관련 산업, 또는 북극항로 활용 확대에 따라 촉진 되는 산업
국가지자체 의무	▶ 북극항로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
기본계획, 실행계획	▶ 북극항로 활용 촉진,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5년) ▶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
실태조사	▶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을 북극항로 실태조사 실시
북극항로 위원회	▶ (소속 및 위원장) 국무총리 ▶ (위원 / 간사) 30명 이내 위원 / 해수부장관 ▶ (기능) 국가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정책조정, 법령·제도 개선 건의,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실무위원회	▶ (위원장) 해수부차관 ▶ (기능) 위원회 안건 검토·조정 등
북극항로 추진본부	▶ (소속) 해양수산부 ▶ (기능) 위원회 사무지원,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사무
국제협력	▶ 북극항로의 개척 및 지속적인 확대와 관련 국가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에서의 참가, 공동연구개발 등 국제협력 사업 추진
인프라 구축 지원	▶ 국가 및 지자체는 재정 및 금융지원 ▶ 정부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연구·개발 실시 ▶ 정부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북극항로 종합지원센터	▶ 해수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
금융세제 지원 등	▶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 시행
위임·위탁	▶ 해수부 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할수 있고,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가능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